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22 선고 2021가합1031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최현미

변론 종결2022. 3. 25.

판결 선고2022. 4. 22.

주 문

1.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684,059원을 345,684,059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20. 5. 25.	99,000,000원	110,000,000원	기업은행
2	2020. 5. 25.	198,000,000원	220,000,000원	기업은행
합계	297,000,000원	330,0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3) B이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20. 11.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1. 3. 16. 기업은행에 300,731,0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은 2020. 10.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2021. 5. 18. 같은 지원 D(중복)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에 대한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배당순위	1	2	3	6
이유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채권최고액	1,260,000,000	142,860,000	260,000,000	629,500,000
배당액	1,118,969,741	63,070,849	260,000,000	85,684,059
잔여액	618,155,924	555,085,075	295,085,075	20,738,078
배당 비율	100%	100%	100%	13.61%

3) 한편, 원고는 2021. 12. 2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인 260,000,000원에 이의하고, 2021. 12. 30.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한 청구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0. 10. 8.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1. 3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B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2021. 3.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B의 무자력 가)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설정계약으로부터 근접한 시기인 2020. 12. 29.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1,673,917,800원¹⁾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의 피담보채권액 1,110,470,127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원금 576,000,000원 +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원금 474,000,000원 + 신용장재채급금 원금 60,470,127원,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에는 이자가 연체되어 있지 않았다)을 공제한 563,447,673원(= 감정가 1,673,917,800원 - F의 피담보채권 1,110,470,12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8,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단위 : 원)

H은행	780,000,000
기업은행 ²⁾ 원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포함시키는 이상 구상채무를 중복하여 포함시키지는 아니한다.	379,413,25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894,956
피고	260,000,000
합계액	1,430,308,210

원고는 B의 I 주식회사에 대한 140,519,060원의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 및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J가 제출한 진술서(을 제14호증)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운영상 문제가 없었으나, H은행이 만기 연장 약속을 파기하고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B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진술하거나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B이 자신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다.'³⁾ 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2) 먼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따라 말소되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20. 10.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1. 12. 29.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684,059원을 345,684,059원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우창

판사곽여산

판사구현주

별지

- 1) 위 가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에 근거한 것인데(기준일: 2020.12.29.),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0. 10. 8. 당시의 시가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 2) 원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포함시키는 이상 구상채무를 중복하여 포함시키지는 아니한다.
- 3) 피고의 2021.10.28.자 준비서면 5/8면 이하 참조